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8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5년 9월 5일)
상정・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업무과장 박 명 호)

□ 제안이유

○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매년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서민가계 부담 및 물가지 수 등을 고려하여 6퍼센트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전 수도사용자 등의 체납 수도요금을 새로운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 과하도록 한 수도요금의 승계 규정을 삭제함.(안 제22조제2항 삭제)
- 당월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이전 4월의 평균치로 하고, 수도 계량기 고장으로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29조제2항 단서신설)
-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·과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규정을 삭제함.(안 제46조 삭제)
-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라 업종별 평균 6.39퍼센트 요금을 인상하고, 업종간 누진 단계를 산업용 및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 로,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조정함.(안 별표 2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	질	의		답	변
0	상수도요금 인상의 인지 ?	주요인은 무엇	0	2004년도 상수도특결과 상수도 요금이지는 것으로써 인상이나 전년도에는 경하여 인상을 억제하현실화를 위하여 업인상하려는 것임.] 원가에도 못미 }요인 12%이상 경제사정을 고려 }였으나 요금의
0	상수도 요금의 인성 수입이 예상되는데 으로 시기를 조정함	경제의 어려움	0	지난해에도 인상 5 으며, 금년에도 두지 있었으나 2006년도 5 에 인상한다면 서민 되므로 충격완화를 한자리의 인상이 조	·리의 인상요인이 12% 이상을 한번 가계에 큰 부담이 위하여 금년에
0	모범음식점에 대한 혜택을 학교에도 조		0	업종별 구분에서 업으로 변경되는 것으정당, 학교등이 있으면을 적용한다면 원정수한 상수도를 공도의 손실이 발생할을 에도 불공정과 부담예상되고 있음.	기종교, 신문사, 오나 학교에만 감 1수를 구입하여 급하는데 6억 정 것이며, 다른업종
0	원수 구입비 인상되수의 인상에서 소비인상폭을 배제하면 질것으로 판단하는	비자 물가지수의 인상율이 낮아	0	소비자 물가지수는 나타내고 있어 적용	
0	여월정수장 부지를 측면의 도움으로 / 하하는 효과가 있다	시민부담율을 인	0	여월정수장은 고정자 으로 하여도 상수도 변동이 없을것임.	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- 5. 심사결과
 - 수정의결
- 6. 소수의견의 요지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

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	안	관련		
번	호	제428호		
의	결	2005. 9. 9		
년	일일	(제121회)		

제안년월일: 2005. 9.8

제 안 자 : 이옥수의원등 명

1. 수정이유

○ 우리시 초, 중, 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학교의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실적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학교 운영의 재정난을 호소하는 실정으로써,

○ 동 조례와 같이 상수도 사용의 업종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수도 요 금을 누적 부과하였을 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학업에 충실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시 사용량과 상관없이 m³당 690원을 적용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제26조 관련 업종별 요율표의 별표2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"단, 학교(초, 중, 고등학교)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한다."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26조 관련 업종별 요율표의 별표2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, 학교(초, 중, 고등학교)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 한다.
-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「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.」

[별표 2]

업 종 별 요 율 표(제26조관련)

(단위 : m³/원)

					<u>(단위: m³/원)</u>
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			업종별 사용량 요금	비고	
계량기 구경별	요 금	업종별	사 용 구 분	요 금	
13m/m 20m/m	620 1,300	가정용	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	340 540 740	
25m/m 32m/m 40m/m 50m/m 75m/m	2,010 3,590 4,900 8,590 16,270		100 이하 1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	560 780 950	
100m/m 150m/m 200m/m 250m/m	27,120 60,220 97,000 143,870	일반용	100 이하 1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	690 990 1,240	단, 학교(초,중,고등학교)에한하여 사용량구분 단계를1단계만 적용
300m/m 350m/m 400m/m	200,830 251,580 282,910	대중탕용	1,000 이하 1,000 초과 2,000 이하 2,000 초과	530 660 850	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부천시수도급수조례"를 "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"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"다음 각호의 1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중 "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"를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「의료급여법」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"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"다음 각호의 1"을 "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"다음 각호의 1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중 "다음 각호의 1"을 "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이전 4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"를 "이전 4월의 평균치를"로 하며, 동

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 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"다음 각호의 1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46조를 삭제한다.

제1조중 "수도법"을 "「수도법」"으로, "수도법시행령"을 "「수도법 시행령」"으로, "수도법시행규칙"을 "「수도법 시행규칙」"으로 하고,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중 "부천시급수공사업무처리 규정"을 각각 "「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」"으로 하며, 제36조제1호 단서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"을 "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"을 "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」"으로 하고, 제43조의2중 "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"를 "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)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업 종 별 요 율 표(제26조관련)

(단위 : m³/원)

		Γ			(단위 : m³/원)
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			비고		
계량기 구경별	요 그	업종별	사 용 구 분	요 금	
13m/m 20m/m	620 1,300	가정용	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	340 540 740	
25m/m 32m/m 40m/m 50m/m 75m/m	2,010 3,590 4,900 8,590 16,270		100 이하 1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	560 780 950	
100m/m 150m/m 200m/m 250m/m	60,220 97,000	일반용	100 이하 1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	690 990 1,240	단, 학교(초·중·고 등학교)에 한하 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
300m/m 350m/m 400m/m	251,580	대중탕용	1,000 이하 1,000 초과 2,000 이하 2,000 초과	530 660 850	

혅 행 개 정 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8조(급수공사 대행업자) ①급수 제8조(급수공사 대행업자) ①----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 -----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 어느 하나-----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다 1. • 2. (생 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1조(공사비의 선납) ①급수공사 제11조(공사비의 선납) ①-----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 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 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 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선 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 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---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 수급자와 「의료급여법」의 규 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 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----에서 분납할 수 있다. ②~④ (생략) ②~④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 정 안
제18조(신고) ①수도 사용자, 손괴자,	제18조(신고) ①
원인자 등은 <u>다음 각호의 1</u> 에 해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
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	나
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,
1.~8. (생 략)	1.~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 (생 략)	제22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 (현행
	과 같음)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	_〈삭 제〉_
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	
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	
그 취득권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	
여도 이를 승계한다.	
제24조(급수중지와 폐전) ①・②	제24조(급수중지와 폐전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시장은 <u>다음 각호의 1</u> 에 해당	③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
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	
수 있다	.
1.~7. (생 략)	1.~7.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사용수량의 인정) ①사용수	제29조(사용수량의 인정) ①
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	
한다. 다만, <u>다음 각호의 1</u> 에 해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

개 정 안

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 용수량에 따른다.

1.~3. (생략)

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 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 이전 4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이상 사 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월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|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사용량으로 한다. 〈단서 신설〉 |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 ③ (생략)

제40조(정수처분) ①시장은 <u>다음</u>제40조(정수처분) ①-----<u>다음</u>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.

1.~1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6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의 규 〈삭 제〉 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는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.

1. 제6조의 급수공사의 승인

1.~3. (현행과 같음)

(2)-----

량으로 한다. 다만, 수도계량기

③ (현행과 같음)

1.~1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23.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조치	
24. 제39조 급수표지 교부	
<u>25. 제40조 정수처분</u>	
26.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	
<u>망실등에 대한 조치</u> 27. 제42조 과태료	
28.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	
29. 제44조 이의신청결정	

현 행							개	정 안		
[별표 2] 업종별요율표 (제26조관련) (단위:m²/원)						[별표 2] 업종별요율표 (제26조관련) (단위:m³/원)				
		(6.11)				(ЕП.	m/ U/			
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		업종별사용량요금								
계량기 구경별	요 금	업종별	사 용 구 분	요금						
13m/m	620		_0~20이하	<u>320</u>				_20 이하	<u>340</u>	
20m/m	1,300	가정용	<u>20초과~30이하</u>	<u>500</u>				<u>20 초과 30 이하</u>	<u>540</u>	
25m/m	2,010		<u>30초과</u>	<u>680</u>				<u>30 초과</u>	740	
32m/m	3,590		<u> ()~5()이하</u>	<u>500</u>						
40m/m	4,900		_50초과~100이하	<u>600</u>				_100 이하	<u>560</u>	
TO /	0.500	산업용	<u>100초과~300이하</u>	<u>700</u>				100 초과 500 이하	<u>780</u>	
50m/m	8,590		<u>300초과~500이하</u>	<u>800</u>				<u>500 초과</u>	<u>950</u>	
75m/m	16,270		500초과	900						
100m/m	27,120		<u>0~50</u> ০] চী	600						
150m/m	60,220		_50초과~100이하	<u>750</u>				<u>100 이하</u>	<u>690</u>	
130111/111	00,220	일반용	100초과~300이하	900				100 초과 500 이하	990	
200m/m	97,000		300초과~500이하	1,050				<u>500 초과</u>	1,240	
250m/m	143,870		<u>500초과</u>	1,200						
300m/m	200,830		0∼1,000০] চী	<u>500</u>				1 000 1151	500	
	200,030	대중탕용	1,000초과~1,500이하	<u>600</u>				<u>1,000 이하</u>	<u>530</u>	
350m/m	251,580	내궁당중	1,500초과~2,000이하	<u>700</u>				2,000 호과 2,000 이하	<u>660</u>	
400m/m	282,910		<u>2,000초과</u>	800				<u>2,000 초과</u>	<u>850</u>	